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09. 6. 25. 2008허12968]

【전문】

- 【원 고】 주식회사 아이이지소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주)
- 【피 고】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태창 외 4인)
- 【환송전 판결】이 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7319 판결
- 【변론종결】2009. 5. 19.

【주문】

1

- 1. 특허심판원이 2004. 10. 30. 2003당2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8. 6. 1./2001. 11. 27./ (등록번호 생략)
 - (3) 특허권자: 피고들
 - (4)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목적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글사용자를 포함하는 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갑 제3호증 1면 아래에서 2행 참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전자메일주소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로서 '.' 문자 등을 포함하는 영문자 문자열이다.
- 갑 제3호증 2면 2행, 3행 참조)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국어 표기(NLN, Native Letter Name)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3면 26행 내지 28행 참조).
- (5)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청구항 1. 웹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NLN)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서버(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및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이하 '구성 ②'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 서버는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구성 ④'라 한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 청구항 2. 메일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및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메일 서버는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과,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전자메일 주소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3.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4. 메일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일서버로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메일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는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상기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7.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대응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클라이언트.

- 나. 비교대상발명들
- (1) 비교대상발명 1
-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은 '도메인 네임이 필요 없는 웹 사이트 검색방법'에 관한 것으로, 1998. 2. 9. 출원되고 1998. 7. 6. 공개번호 (공개번호 1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 (2) 비교대상발명 2
-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것으로, 1999. 2. 2. 국제출원 되고 1999. 8. 5.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번호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 (3) 비교대상발명 3
- 1997. 8. 27.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7호증의 1, 2)와 1998. 1월에 발간된 Inside The Internet 잡지의 기사(갑 제23호증)에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keyword)를 등록시키고, 사용자(user)가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직접 해당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를 넷워드라고 명명하고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며, 홈페이지 소유자는 여기에 자신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넷워드를 등록해 사용자에게 향해 고지하면 되고, 한편 사용자가 넷워드를 사용해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브라우저에 플러그인하고 (갑 제7호증의 1, 2의 번역문 7행 내지 17행 참조),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사용자가 기재하는 모든 것을 읽어서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넷워드(netword)라면 플러그인은 넷워드(netword)웹 사이트에 있는 URL리스트를 액세스하여 해당 URL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페이지를 접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의 번역문 2면 4행 내지 7행 참조).
 - (4) 비교대상발명 4
- 1998. 4. 8.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8호증의 1, 2)와 1998. 3. 12.자 CNET 뉴스의 기사(갑 제20호증)에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 게 WWW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회비 40달러를 지불하면,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고, 일반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료 배부 되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리얼네임을 입력하면, 정확한 URL을 몰라도 직접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는데(갑 제8호증의 1, 2의 번역문 1면 10행 내지 16행 참조),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보통은 한 참 을 클 릭 해 들 어 가 서 찾 을 수 있 는 특 정 제 품 에 대 한 해 당 페 이 지 는 'www.joesoftware.com/applications/widget'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joe's Widget'라 고 입력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번역문 1면 14행 내지 17행 참조).
 - (5) 비교대상발명 5
-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는 '인터넷에서의 액세스 방법 및 시스템, 인터넷에의 액세스 처리를 기억한 기억 매체'에 관한 것으로, 1997. 1. 17. 출원되고 1998. 3.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공개번호 2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 (1) 원고는 2003. 12. 2.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의 각 1, 2, 및 비교대상발명 5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611호로 심리한 다음, 2004.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는 2004. 11. 17.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04허7319호로 심리한다음, 2006. 1. 12. 이 사건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원고는 2006. 2. 2. 대법원에 2006후435호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11. 1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환송전 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8. 6. 1./2001. 11. 27./ (등록번호 생략)
 - (3) 특허권자 : 피고들
 - (4)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목적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글사용자를 포함하는 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갑 제3호증 1면 아래에서 2행 참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전자메일주소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로서 '.' 문자 등을 포함하는 영문자 문자열이다.
- 갑 제3호증 2면 2행, 3행 참조)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국어 표기(NLN, Native Letter Name)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3면 26행 내지 28행 참조).

- (5)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 청구항 1. 웹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NLN)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서버(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및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이하 '구성 ②'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 서버는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구성 ④'라 한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이하 '이 사건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 청구항 2. 메일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및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메일 서버는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과,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전자메일 주소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3.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4. 메일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일서버로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메일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 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는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상기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 청구항 7.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대응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클라이언트.
 - 나. 비교대상발명들
 - (1) 비교대상발명 1
-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은 '도메인 네임이 필요 없는 웹 사이트 검색방법'에 관한 것으로, 1998. 2. 9. 출원되고 1998. 7. 6. 공개번호 (공개번호 1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 (2) 비교대상발명 2
-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것으로, 1999. 2. 2. 국제출원 되고 1999. 8. 5.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번호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 (3) 비교대상발명 3
- 1997. 8. 27.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7호증의 1, 2)와 1998. 1월에 발간된 Inside The Internet 잡지의 기사(갑 제23호증)에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keyword)를 등록시키고, 사용자(user)가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직접 해당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를 넷워드라고 명명하고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며, 홈페이지 소유자는 여기에 자신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넷워드를 등록해 사용자에게 향해 고지하면 되고, 한편 사용자가 넷워드를 사용해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브라우저에 플러그인하고 (갑 제7호증의 1, 2의 번역문 7행 내지 17행 참조),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사용자가 기재하는 모든 것을 읽어서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넷워드(netword)라면 플러그인은 넷워드(netword)웹 사이트에 있는 URL리스트를 액세스하여 해당 URL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페이지를 접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의 번역문 2면 4행 내지 7행 참조).
 - (4) 비교대상발명 4

- 1998. 4. 8.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8호증의 1, 2)와 1998. 3. 12.자 CNET 뉴스의 기사(갑 제20호증)에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 게 WWW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회비 40달러를 지불하면,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고, 일반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료 배부 되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리얼네임을 입력하면, 정확한 URL을 몰라도 직접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는데(갑 제8호증의 1, 2의 번역문 1면 10행 내지 16행 참조),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보통은 한 참 을 클 릭 해 들 어 가 서 찾 을 수 있 는 특 정 제 품 에 대 하 해 당 페 이 지 는 'www.joesoftware.com/applications/widget'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joe's Widget'라 고 입력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번역문 1면 14행 내지 17행 참조). (5) 비교대상발명 5
-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는 '인터넷에서의 액세스 방법 및 시스템, 인터넷에의 액세스 처리를 기억한 기억 매체'에 관한 것으로, 1997. 1. 17. 출원되고 1998. 3.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공개번호 2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 (1) 원고는 2003. 12. 2.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의 각 1, 2, 및 비교대상발명 5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611호로 심리한 다음, 2004.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는 2004. 11. 17.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04허7319호로 심리한다음, 2006. 1. 12. 이 사건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원고는 2006. 2. 2. 대법원에 2006후435호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11. 1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환송전 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